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7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8. 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8. 5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8. 17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- 2004. 6.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 운영에 앞서 한시기구 시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함.
(부칙 제4항, 한시정원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며,

-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여 2004. 6. 30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면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,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운영에 앞서 한시기구 시한연장에 따라 읍면기능전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5. 6. 30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여유기구제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가?
- 답 :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(과단위)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- 문 :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의 소급 적용의 문제는 없는가?
- 답 : 2004. 6. 30 경상남도로부터 읍면동기능전환관련한시기구처리지침이 늦게 접수되어 조례개정안 제출이 늦었으나 조례시행일의 소급적용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문 : 2004. 8. 16자 인사발령시 (재)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사무국 파견 근무 공무원을 다시 발령하게된 요인은?
- 답 : 2006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고 내부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인사발령하게 되었습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8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